2023년도 서울형 R&D 지원사업 제7회 서울혁신챌린지 공고

다양한 참가자간 교류와 경쟁을 통해 우수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R&D자금을 지원하고자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은 관련 지침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모집 개요

- 지원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
 - 핀테크,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드론, 자율주행,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 지원규모: (예선) 약 32팀, 팀별 2,000만원 지원(시지원연구개발비 100%, 기술료 비징수) (결선) 약 10팀, 탐별 1 ~ 2억원 지원(시지원연구개발비 총 사업비의 75%, 기술료 장수)
- 공모유형: 자유공모

필독 사항

- 비전문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과제명, 과제내용 작성 요망
- 협약 전 시지원연구개발비 100%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결선의 경우 과제 규모. 사업비 편성내역.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조정) 지급
- 선정 전·후 허위시실 기재, 유시성이 높은 중복과제, 시업비 유용 등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참여제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환수 등의 제재조치 가능
- 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 지원제외 대상, 우대가점 목록 확인 필수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내용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적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제7회 서울혁신챌린지

■ 사업목적

○ 다양한 참가자간 교류와 경쟁을 통해 우수한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R&D자금을 지원

■ 지원분야: 4차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

○ 핀테크, 로봇, 디지털헬스케어, 인공지능, 블록체인, 드론, 메타버스,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등

■ 지원내용

- 혁신기술 R&D자금 지원
- 참여팀 간 아이디어·팀빌딩 교류 지원
- 멘토링 지원(기술, 경영, 사업화 등)
- 기술 협력파트너·투자유치 연계 및 성과홍보 지원 등

■ 지원규모 : 총 18.9억원

○ 예선 : 32개 과제, 과제별 2,000만원 지원 (4개월)

○ 결선 : 10개 과제, 과제별 1~2억원* 지원 (10개월)

*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추진절차

1 / 접수				2/	<u>બ્રા</u> <u>સ</u>
공고	이이디어 · 팀빌딩(선택)	과제계획서 접수	=	예선 평가	시제품 개발
'23.4월	5월	6월		7월	8~11월

		3 / 결선			4 / 완료
→	결선 평가 12월	서울시실무 조정위원회 24.1월	기술 개발 ~'24.2~11월	→	최종 평가 25.3월

■ 아이디어 · 팀빌딩 프로그램 개요 (선택사항)

○ 일시 : 2023.05.08.(월), 05.17.(수), 05.31(수) 오후 (총 3회차)

○ 장소 :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내

○ 대상 : 제7회 서울혁신챌린지 아이디어·팀빌딩 프로그램 신청자

○ 목적 : 다양한 참가자(기획자, 마케터, 개발자, 디자이너) 간 교류 및 전문가

/선배기업 강연 통한 아이디어 협업, 팀빌딩 지원

○ 내용

- ① **혁신기술·경영 전문가** 강연(핀테크, 디지털헬스케어, 로봇 등)
- ② 서울혁신챌린지 선배기업 노하우 강연
- ③ 참가팀 아이디어 발표 후 참가자 간 자율 네트워킹
- ④ 스몰 멘토링(기술·경영·사업화 등) 제공
- 참여혜택 : 서류평가 동점자 발생 시 본 공고 회차 아이디어·팀빌딩 프로그램 (총 3회차) 참여율(회차, 인원 등)에 따른 우선권 고려
- 주요 프로그램

		1회차	2회차	3회차			
일시		5/8(월) 5/17(수)		5/31(수)			
짇	}소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특별강연	#디지털헬스케어 #대기업 미래시업	#로봇 #스타트업 자금조달	#투자 트렌드 #비즈니스모델			
주요 프로그램	선배기업 강연	서울혁신챌린지 선배기업의 기술개발 전략 및 노하우 강연					
	아이디어 발표	아이디어 협업 및 팀빌딩 위한 팀 발표 (팀당 5분 이내)					
	네트워킹	기획자, 개발자, 마	기획자, 개발자, 마케터, 디자이너 간 자율 네트워킹 및 멘토링				

[※] 행사준비 현황에 따라 일부내용 변경될 수 있음. 상세내용 행사 포스터 참고.

2. 지원 원칙 및 기준

■ 기본 원칙

-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서울시 4대 신산업(AI,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로봇) R&D 과제 전격 지원 및 약자와의 동행 위한 우수과제 적극 발굴
 - 4대 신산업 중 접수율이 낮은 바이오(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로봇분야 가점 2점 및 약자동행 기술(약자동행추진단 인정) 가점 1점 부여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목표 및 내용이 동일한 과제로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타 지자체 R&D・기업 지원사업에 중복으로 지원 받을 수 없음
- 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양산 등을 위한 사업화 관련 연구개발비 지원
 - 인건비, 시작품·시제품 제작, 안전성·유효성 평가, 시험인증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R&D자금 지원
 - ※ 연구개발비 편성 기준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고
- 연구개발비는 실시간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집행이 가능함
- 협약체결 시, 시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 보증기간 : 사업기간+6개월(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비용 사업비 소급 가능)
 - ※ 최종 선정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미제출시 협약 중지

■ 지원 기준

- 예선 : 2,000만원 지원 (시지원연구개발비 100%, 기술료 비징수)
- 결선 : 1~2억원 지원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기술료 징수)
 - (시지원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전체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부담
 -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나머지 현물 부담

구분	전체 시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TE	연구개발비(가)	(나)	총액(다)	현금(라)	현물(마)	
구성 기준	(나)+(다)	(가)의 75% 이하	(가)의 25% 이상	(다)의 10% 이상	(다)-(라)	
(예시)	266,667,000원 (100%)	200,000,000원 (75%)	66,667,000원 (25%)	6,667,000원 (2.5%)	60,000,000원 (22.5%)	

3. 신청 자격

[아이디어 · 팀빌딩]

○ 국내·외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학, 컨소시엄 등

[예선 이후]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

○ 협약체결 이전까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법인사업자

※ 결선의 경우

협약체결 이전까지 법인등기부등본 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혹은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

* 본점 또는 지점(기업부설연구소 포함)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 (컨소시엄의 경우)

- **산(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학(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각 호의 학교의 산학협력단
- 연(연구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그 밖에「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 병(병원): 「의료법」제3조3의 종합병원(지역 제한 없음)

■ 연구책임자의 자격

- 주관연구책임자 : 상기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로 대표자, 연구소장급을 원칙으로 하 되 해당분야의 기술개발 수행능력과 경험을 갖춘 자
- 공동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가 과제의 특성에 따라 지정하는 자로 상기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갖춘 기관에 소속된 교수, 연구원, 기업 대표·연구소장, 연구자 등
 -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상세 자격, 권한 및 책임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참고

4. 신청기간 및 방법

■ 아이디어 · 팀빌딩 신청 : 각 회차별 행사일자 3일전까지 접수 (현장접수 가능)

- 구글 설문 신청 : https://forms.gle/fhjrmkMvkSx9XGmG7
- 아이디어팀빌딩은 선택사항이며,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구글설문으로 신청 가능

■ 예선용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23.6.1.(목) ~ 6.30.(금) 16:00 까지

- SBA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방법

 서류 작성
 ▶
 회원가입
 ▶
 온라인 입력 및 파일 업로드
 ▶
 본라인 설문조사
 ▶
 및 완료

① 공고문 확인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공고문 확인 : SBA R&D지원센터 알림마당 사업공고 제7회 서울혁신챌린지
- 주관연구책임자가 사업공고 게시글의 첨부 파일 중 연구개발계획서 양식을 받아 작성

②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초 주관연구책임자 개인회원 가입

- 우측 상단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서울경제진흥원 홈페이지와 연동되며 회원가입 진행
- ※ 기존 가입자는 별도 가입절차 없이 기사용한 계정 사용 가능
- ※ 과제책임자 개인명의로 과제가 신청되므로, 개인회원 계정의 명의 확인 필수

③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 주관연구책임자 개인아이디로 SBA R&D지원센터 로그인
- SBA R&D지원센터 홈페이지 왼쪽 하단 '종합관리시스템' 클릭 하여 접속
- 종합관리시스템 왼쪽 상단 사업공모 제7회 서울혁신챌린지 클릭
- 기본정보, 과제분류, 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연구개발비 등 입력 및 내역 확인

◆ 연구개발기관 등록 방법 (신규 사업 참여일 경우)

- SBA 홈페이지 개인회원 가입 후 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로그인
- 좌측 메뉴: 기관정보 → 기관조회 → 새로입력 클릭 후 작성
- 첨부파일 탭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제반서류를 각 항목에 맞추어 업로드 ※ 파일은 한 번에 10개 파일까지 업로드 가능, [저장] 후 추가 업로드 가능(압축파일 업로드 금지)
- 최종 업로드 후, 우측 상단 제출하기 버튼 클릭하여 최종 제출완료 상태 확인 ※ 파일 업로드 직인 및 서명 포함, 임시저장 후 미제출시 접수 누락(제출 후 수정 불가)

4) 설문조사 진행

- 설문조사 링크 : https://forms.gle/9zWcsHJHN5FZmp598

■ 예선평가 제출서류

구분	서 식 명		상	제출형태			
十七			공동	세출생대			
	단계1: 과제 신청 시						
계획서	① 연구개발계획서 (반드시 직인 날인)	О	X	한글 또는 PDF			
증빙서류	② 해당시 우대가점 증빙서류 ※ 가점 사항은 종합관리시스템(PMS)에 체크 필수	0	X	한글 또는 PDF			
[해당시]	③ 제7회 서울혁신챌린지 아이디어팀빌딩 프로그램 참여 현황	0	0	한글 또는 PDF			
온라인	설문조사 (주관기관 필수, 미수행 시 평가대상 제외)	О	X	제출 후 팝업/링크			
	단계2: 발표평가 추천대상(서류평가 통고	l) 시					
	① 신청자격 요건검토 확인서	0	О				
붙임	②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0	0				
[필수]	③ 최근 3년 간 서울형 R&D 지원사업 및 중앙정부· 타 지자체 R&D 지원사업 수행 현황	0	Ο	한글 또는 PDF			
붙임	④ 연구장비시설 구입 계획서	0	0				
[해당시]	⑤ 참여제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0	Ο				

^{*} 결선평가 제출서류는 대상자 별도 통보

5. 추진절차 및 선정기준

■ 예선 추진절차 ※ 결선 추진절차의 경우, 대상자 별도 안내 예정

공고 및 접수	예선평가	선정 결과 안내
(4~6월)	(7월)	(7월)
서울R&D지원센터 종합관리시스템	서류평가 → 자격요건 검토 → 발표평가	홈페이지공고 및 공문발송
주관연구개발기관 → SBA	SBA	SBA→ 주관연구개발기관

- ※ 상기 평가, 선정 협약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선정평가는 과제 접수 현황에 따라 서류·발표평가의 단계별 또는 통합 발표평가 진행
- ※ 필요 시,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예선평가

① [서류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서류평가

-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를 발표평가 대상 과제로 추천
- ※ 서류평가 동점자 발생 시 본 공고 회차 아이디어·팀빌딩 프로그램(총 3회차) 참여율(회차, 인원 등)에 따른 우선권 고려
- ② [자격검토] 서류평가 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으로 발표평가 대상과제에 대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 ③ [발표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 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 예선평가 기준

(서류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기술개발의 타당성	[혁신수준] 개발기술의 혁신성		
		[기술파급도] 기술적 확장성		
기 스 서		[기술확보 난이도]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성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기술개발 방법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능력	연구기관 인프라		
11 O1 V4	[사업화 시기] 사업화 환경			
사업성	[시장성숙도] 목표시장의 성장성			

(발표평가)

평가항목	세부항목	세부내용		
		[혁신수준]개발기술의 차별성		
	기술개발의 타당성	[기술파급도]기술적 확장성		
기술성		[기술확보 난이도]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출경 	기술개발 목표 및 방법의 적정성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기술개발 추진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능력	연구자의 역량		
	[사업화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타당성			
사업성	[경쟁사와 격차] 시장진입 및 경쟁력 확보 가능성			
	[사업화 능력] CEO의 사업화 의지 및 기업의 제품개발 역량			

■ 결선평가: 전문가평가와 시민평가 결과 합산하여 선정

① [전문가평가] 기술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을 중심으로 발표평가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발표평가 평점 = 평가위원 수 - 2

- ② [시민평가] 시민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기술의 필요성. 기대효과 등 종합평가
- ③ [자격검토] 평가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으로 대상과제에 대하여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 확인. 필요시 현장점검 가능
- ※ 전년도 미선정된 결선진출과제 중 일부 과제의 경우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 ※ 7회 결선 미선정팀은 8회 서울혁신챌린지 결선 재도전 신청 가능함

■ 현장점검

- 전문기관은 신청과제의 최종 선정 대상 후보 도출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우선순위 부여 대상"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인력, 연구시설 장비 및 인프라 등 과제수행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조정위원회에 평가할 지원대상 후보군 리스트를 제공해야 함
- ※ 현장점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실무조정위원회

- 전문기관장은 결선평가와 현장점검 등으로 도출된 지원 대상 후보군에 대하여 자격요건, 재무현황, 평판, 서울시책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과제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 ※ 단, 필요시 서울시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과제 선정을 의결할 수 있음
- ※ 실무조정위원회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 우대가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시 최대 5점 적용)

해 당 사 항	가 점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인 경우(중복 가점 가능) 등 증빙서류 : 여성기업확인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은 불인정)	각 1점
② '서울형 R&D 지원사업'에서 최근 3년 이내 '성공(우수)'로 평가받은 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에 연구책임자 신분으로 과제 신청한 경우 ☞ 증빙서류 : 서울형 R&D 지원사업 최종평가 결과 안내 공문(결과공문: 성공(우수) 표기 과제)	1점
③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하이서울기업인 경우 ☞ 하이서울브랜드 확인서	1점
④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이 SBA 지원시설 입주 또는 입주 예정 기업인 경우 등 방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입주예정 확인서(지원시설에서 발급)	1점
⑤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받은 경우 등 방서류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한국산업기술진홍협회)	1점
⑥ 4대 신산업분야(디지털헬스케어, 핀테크, 로봇)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일 경우 등빙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소명내용 작성	2점
① 서울시 정책 '약자와의 동행'에 해당하는 약자 지원 기술개발 과제인 경우 ☞ 증빙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내 소명내용 작성 - 서울시 협의를 통해 판단 약자 예시 ▲ 복지사각지대 약자(청년도 노년도 아닌 중간층 약자, 자치구 간 복지격차로 인한 약자, 신청주의 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된 약자) ▲ 자립준비 청년(보호 종료 청소년, 부상제대군인, 예비청년부부, 가족돌봄청소년 등) ▲ 디지털 약자(스마트폰 약자, 정보 소외 약자, 신기술 약자 등) ▲ 정신건강 약자(심리적으로 고립된 청년, 조현병 환자와 가족 등) ▲ 산업전환 약자(급격한 산업전환으로 실업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종사자 또는 창업자 등) ▲ 주거 약자(반지하 거주자, 주거 빈곤계층 등) 등	1점

■ 감점 사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시 적용)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또는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시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전문기관 확인

[※] 가감점은 예선평가에서만 적용

6. 지원제외 대상

- ※ 연구개발기관(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연구개발계획을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선정 취소 가능
- ※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음

	구 분	내 용
7	1 元 7173	-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 연구개발내용에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기관 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7	접수서류	- 과제계획서 등 제반서류(설문조사 포함)를 미제출 및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증복성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 서울형 R&D 지원사업 중 동일 세부사업 수행 중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 단, 접수 마감일 기준 수행 중인 서울형 R&D 지원사업의 잔여 연구개발기간이 6개월 이내인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예외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서울형 R&D 지원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과제	- 신청된 세부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이 중복성(기지원, 기개발)이 인정된 경우
인경	^인 비계상률	- 과제(부문)책임자가 타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 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한 경우 ※ 과제(부문)책임자는 당해 과제수행을 위하여 인건비계상률 30% 이상 계상하여야 함
ع	기무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및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기업의 부도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개인의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신용 및 기업 상태		 (체 납)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채무불이행)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체불사업자 포함)로 등록된 경우 ※ 체납・채무불이행 관련 지원제외 적용 예외 대상(접수마감일 전에 적용되어야 함) ① 체납・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구 분	내 용
	< 관련 문의처 >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른 신용회복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1600-5500)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재창업자금(보증) 및 재기지원 보증→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www.rechallenge.or.kr)
기타	- 기타 본 사업목적 및 지원분야 등으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사업공고일 기준 3년 전까지 연구개발사업 5회 선정을 초과한 경우

※ 본 내용 외 구체적인 지원제외 대상은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7. 기술료 징수 기준

- (기술료 징수대상) 최종평가 결과 '우수, '보통'인 과제의 주관연구개 발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실시권자가 전문기관에게 사용 시지원연구개발비의 10%(중소기업 기준) 기술료 납부

8. 과제접수 및 수행 시 주의사항

- ①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제재할 수 있음
- ② 지원 우선순위 대상 선정 시, 연구개발기관(기관, 기관별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설문조사 및 연구개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함
- ③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내용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 및 서울시 산학연 연구개발 관리지침'적용
- ④ 본 사업 신청완료를 위해서는 링크(https://forms.gle/9zWcsHJHN5FZmp598)를 통해 제공되는 설문양식을 작성 후 제출 완료해야 신청이 완료됨
- ⑤ 과제선정 후 불가항력적 사유 외 사업 포기 시, 추후 사업 참여 제재

⑥ 관련 용어 정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연구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서울시 소재 기관, 단체 또는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을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고 주관연구개 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시장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

9. 문의처

■ 0|메일: sbatech@sba.seoul.kr

■ 연락처: 서울혁신챌린지 담당 02-2222-3815, 812, 811

서울경제진흥원은「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과한 법률」에 의거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관계법률 및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반 행위를 확인한 누구든지 SBA 클린신고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 등을 통하여 신고 가능합니다.